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552
----------	-------

발의연월일 : 2026. 6. 26.

발 의 자 : 김예지 · 최수진 · 임종득
박덕흠 · 안철수 · 이달희
정성국 · 배준영 · 고동진
서미화 · 이수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중증 장애경제인에게 직업생활을 보조하는 업무지원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경우 업무지원인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증 장애경제인에게 일률적으로 정부의 업무지원인 없이 소속 직원에게 업무지원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음. 실제로, 2023년 기준 중증장애인이 대표자이며 종사자가 2인 이상인 장애인기업 20,107개 중 94.3%(18,962개)는 종사자 10명 이하의 영세한 규모인 것으로 드러남. 따라서 영세한 소상공인인 장애인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무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대상에 소상공인인 장애인기업의 대표자

를 포함하여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장애경제인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법률 제 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1항 중 “장애경제인의”를 “장애경제인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장애인 기업의 대표자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의3(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u>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u>(이하 이 조에서 “업무지원인”이라 한다)을 보내 장애경제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제10조의3(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① ----- ----- ----- ----- -----<u>장애경제인</u> <u>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장애인 기업의 대표자의</u>-----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